

---

# 2021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

---

2021. 12. 28.



# I 용역 개요

## 1. 용역 배경 및 목적

-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인권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우리 정부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인권경영을 확산하고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기업과 인권 NAP 수립 촉구,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발간, 인권경영포럼 개최 등을 통해 인권경영에 대한 공공기관의 인식 변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최근에는 ‘사회적 가치’가 새롭게 우리나라의 중요한 정책 방향으로 조명되면서 인권경영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도 정부 정책 방향과 부합하는 인권경영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실제적·잠재적 인권리스크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기관 맞춤형 인권경영 추진력을 제고하고자 함

## 2. 용역 수행내용

<표 1-1>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인권영향평가 용역 수행 범위

용역 구분	세부 수행내용
가. 평가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평가 대상, 방법, 기간 등 협의</li><li>▪ 2021년 인권경영 추진실적 및 계획안, 인권경영 진행사항 점검</li></ul>
나. 평가지표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기존 평가지표 검토 및 보완</li><li>▪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지표 개발</li></ul>
다. 평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평가지표 교육 실시</li><li>▪ 1차 평가 : 담당부서 자체점검</li><li>▪ 2차 평가 : 전문가 인터뷰</li></ul>
라. 결과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최종 평가 결과 집계</li><li>▪ 중요도/시급도에 따른 우선순위 선정</li></ul>
마. 보고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취약분야 및 시사점 도출</li><li>▪ 제도적·실천적 보완사항 도출</li></ul>
바. 결과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인권영향평가 최종 결과 보고</li></ul>

<표 1-2>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인권영향평가 용역 진행과정

구분	세부 수행내용	수행일정
가. 평가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 대상, 방법, 기간 등 협의</li> <li>▪ 2021년 인권경영 추진실적 및 계획안, 인권경영 진행사항 점검</li> </ul>	10월 3주
나. 평가지표 확정	▪ 기존 평가지표 검토 및 보완	10월 4주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지표 개발	11월 1주
다. 평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지표 교육 실시</li> <li>▪ 1차 평가 : 담당부서 자체점검</li> </ul>	11월 2~4주 (교육: 11월 23일)
	▪ 2차 평가 : 전문가 인터뷰	12월 1주 (12월 2일)
라. 결과 분석	▪ 최종 평가 결과 집계	12월 2주
	▪ 중요도/시급도에 따른 우선순위 선정	
마. 보고서 작성	▪ 취약분야 및 시사점 도출	12월 3주
	▪ 제도적·실천적 보완사항 도출	
바. 결과 보고	▪ 인권영향평가 최종 결과 보고	12월 4주

## II 대내외 인권경영 환경분석

### 1. 인권경영에 관한 국내외 동향 분석

#### 가. 인권경영에 관한 국제사회 동향 분석

- 인권경영과 관련된 국제적 기준은 다음과 같음

〈표 2-1〉 인권경영 관련 국제적 기준

구분	내용
다국적기업과 사회정책에 관한 ILO 3자선언 (1977년)	· 일반정책, 고용, 훈련, 노동조건·생활조건, 노사관계 등 5개 분야에서 노동인권에 관한 상세한 지침 제공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1976년)	· ‘인권’ 조항에서 국가의 인권보호 의무에 대하여 국제적 인권의 프레임워크, 국제적 인권의무 및 관련법, 기업 내에서 권고해야 할 사항 등 총 6가지를 제시(2011년 개정)
SA(Social Accountability) 8000 (1997년)	· 아동노동, 강제노동, 건강·안전, 결사의 자유, 차별, 징계, 근로시간, 보수, 관리 등 인권보호 관련 가이드라인 제공
노동에 있어서 기본원칙과 권리에 관한 ILO 선언 (1998년)	·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강제노동의 금지, 아동노동의 실효적 폐지, 작업장 차별금지 등 8개 핵심협약에 대한 존중·실현 의무 명시
UN 글로벌 콤팩트 (1999년)	· 세계인권선언, 노동에 있어서 기본원칙과 권리에 관한 ILO 선언, 환경과 개발에 대한 리우 선언, UN 부패방지협약 등을 기초로 하여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4대 분야 10대 원칙 제시
GRI 지속가능성 보고 가이드라인 (2000년)	· 투자, 차별금지,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아동노동, 강제노동, 보안 정책, 지역주민 인권 평가, 공급자 인권영향평가, 인권 고충처리 메커니즘 등에 관한 보고 요구
ISO 26000 (2010년)	· 환경, 인권, 노동관행, 지배구조, 지역사회 참여 및 개발, 공정거래, 소비자 이슈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구체적 기준 제시

- 인권경영과 관련 국외 정부의 동향은 다음과 같음

<표 2-2> 인권경영 관련 국외 정부 동향

구분	내용
유럽연합 (E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실사 및 기업책임에 관한 지침 채택 (2021.03.)</li> <li>· ESG 관련 정책 지속적 수립</li> </ul>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등성 마크(Equality Label) 제도를 통해 기업 내 양성평등 장려를 위한 인증기준 별도 마련</li> <li>· 유럽 최초로 ‘기업인권 모니터링의무법(French Corporate Duty of Vigilance Law) 제정 (2017.02.). 프랑스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 일어난 노동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li> </ul>
덴마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기업부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인간과 이윤(People and Profit)”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중소기업이 전략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교육</li> <li>· 국가인권기구인 덴마크 인권연구소에서 인권영향평가 지침 및 진단도구 개발</li> </ul>
스웨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의 인권경영 및 사회적 책임과 관련하여 기업발전위원회(NUTEK), 국제개발위원회(Sida), 전지구적 책임성을 위한 파트너십(외무부 산하기관) 등 다양한 위원회에서 특정 임무 전담</li> <li>· 1999년 이후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연례 기업보고서 내 환경영향 관련 회계정보 공시 의무</li> <li>· 기업의 인권 관련 시행계획(Action Plan for Business and Human Right) 발표 (2015.08.)</li> </ul>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세계 최초의 영국표준인증기준인 BS8900 도입</li> <li>· 세계 최초로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을 수용하기 위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 (2013.09.)</li> <li>· 현대판 노예방지법(Modern Slavery Act) 발효(2015.03.)</li> </ul>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방시민참여네트워크 : 연방정부, 주정부, 지자체, 비영리조직, 교회, 시민사회단체, 기업으로 구성되어 전국 단위의 시민참여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인권을 촉진</li> <li>· 국가, 기업, 시민사회, 노동조합 등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인권실태 개선에 적극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가행동계획 공표(2016.12.)</li> </ul>
캐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인권선언 및 7개 주요 UN 인권 협약·규약을 비준</li> <li>· 캐나다 인권법(the Canadian Human Rights Act), 고용평등법(The Employment Equity Act), 캐나다 노동법(The Canada Labour Code) 등에 의해 국민 권리 보호</li> </ul>

## 나. 인권경영에 관한 국내 정부 동향 분석

〈표 2-3〉 인권경영 관련 국내 정부 동향

구분	내용
국가인권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증진행동전략(2021~2025년)」 수립</li> <li>·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발간(2014.09.)</li> <li>·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발간(2018.08.)</li> </ul>
법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무행정 인권교육 개선추진단」 출범(2020.06.)</li> <li>· 「인권수사 제도개선 TF」 발족(2020.06.)</li> <li>·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정책기본법」 공동추진 및 입법예고(2021.06.30.)</li> </ul>
여성가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영향 분석·평가’,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 14개 주요업무 수립</li> <li>· 성희롱·성폭력 범죄 대응을 위해 여성가족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협의체 구성·운영</li> <li>·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 설치</li> </ul>
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 보호 및 존중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립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li> <li>- 직장 내 괴롭힘 방지</li> <li>- 부당노동행위 근절</li> <li>- 사업장의 안전한 일터 조성</li> <li>- 채용·보상·처우 등 노동시장 전반에 공정한 일터 조성 강화</li> </ul> </li> </ul>
기획재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공공기관 배포(2019.02.)</li> <li>· 여성임원 비율 확대, 장애인 고용비율 및 고졸인재 신규채용비율 목표 달성 등 인권 관련 다양한 노력 이행</li> </ul>
경제·인문사회연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관 연구기관의 연구수월성 증진을 위해 매년 연구기관 평가 실시</li> <li>· 연구기관 평가는 연구 분야(800점)+경영 분야(200점), 총 1,000점 만점으로 평점을 집계함</li> <li>· 경영분야 지표 중 ‘2-2-2. 사회적 가치’ 지표의 평가요소로 ‘윤리경영을 위한 연구기관의 노력과 실적’ 이 18점 배점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세부 평가내용으로 ‘인권경영 추진 노력 및 성과’ 가 포함됨</li> </ul>
산업통상자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가능경영유공 시상식 개최 및 「K-ESG 가이드라인」 발표(2021.12.)</li> <li>· 정보공시(P),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4개 영역, 27개 범주, 61개 기본 진단 항목으로 구성되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면서도 국내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됨</li> </ul>

## 2. STEPI 인권경영 추진현황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인권경영 추진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인권경영 실행체계 7개 영역을 살펴봄. 인권경영 실행체계란 기관이 인권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제도 및 각종 실천 프로그램을 포괄하는 실행기반을 의미함. 실질적인 실행 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갖추어야 할 요소이며, 향후 추진되는 모든 인권경영 활동의 기반이 되므로 기관의 특성에 맞게 반드시 구축되어야 함

<표 2-4>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인권경영 실행체계 현황 및 개선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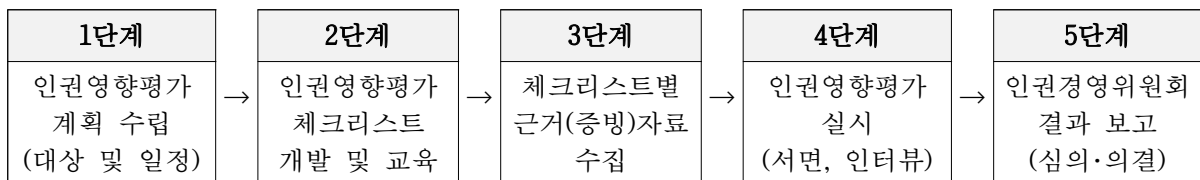
실행체계	현황 및 개선의견
① 인권경영 추진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경영 비전, 목표, 추진전략 등 기관의 인권경영 추진방향을 나타내는 체계 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li> <li>▪ ‘세계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글로벌 인권경영 선도기관’을 인권경영 비전으로 하는 추진체계 제안</li> </ul>
② 기관장 인권경영 추진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경영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원장은 인권경영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에 상응하는 활동을 할 필요가 있음</li> <li>▪ 인권경영현장 선포식, 원장의 인권경영 메시지 게시 등 제안</li> </ul>
③ 인권경영 추진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의·의결기구인 인권경영위원회를 구성함</li> <li>▪ 인권경영 주관부서(인사관리팀), 감시부서(감사실) 구성</li> </ul>
④ 인권경영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경영현장·인권경영 규정 제정 및 검토</li> <li>▪ 향후 지속적인 규정의 검토를 통해 인권경영 이행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li> </ul>
⑤ 인권경영 평가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리스크 파악을 위한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실시(2019~2021년)</li> </ul>
⑥ 인권침해 구제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홈페이지 내 인권침해 신고채널을 운영 중이며, 접근 및 이용 절차는 용이한 것으로 판단됨</li> <li>▪ 신고 페이지 신고·상담 대상, 처리 절차 등을 상세히 기재해 이용 편리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함</li> </ul>
⑦ 인권경영 교육 및 공감대 확산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직원 대상 온라인 교육 실시(2020년)</li> <li>▪ 임직원의 인권의식 제고를 위해 교육 및 프로그램 형태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li> </ul>

### Ⅲ 인권영향평가

#### 1. 인권영향평가 개요

- 인권영향평가란, 기관이 사업 수행의 결과 또는 그 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제적·잠재적 인권리스크를 파악하고 평가하는 절차를 의미하며, 기관 운영 인권영향평가와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로 구분됨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는 기관 활동 전반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로, 인권경영 체제, 고용, 노동권, 산업안전, 협력업체, 지역주민 등 포괄적인 분야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의미함.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지표는 10개 분야, 28개 항목, 104개 세부지표로 구성됨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는 기관이 추진하는 특정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로, 해당 사업이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분석하여 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평가를 의미함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지표는 연구원 제공자료를 바탕으로 2020년 평가지표를 고도화함. 책임있는 연구관리, 국민 및 고객의 인권 보호, 연구사업 종사자의 인권 보호의 3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분야별 원칙은 사업단계에서 인권 침해에 연루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제시한 것임.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지표는 3개 분야, 9개 항목, 29개 세부지표로 구성됨

〈표 3-1〉 인권영향평가 수행 프로세스





〈표 3-2〉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지표

평가분야	평가항목	지표 총계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24)	[1] 인권존중 정책선언	6
	[2]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4
	[3]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조치	5
	[4] 인권경영성과	4
	[5] 구제절차 마련	5
2. 고용상의 비차별(16)	[6] 고용상 비차별	5
	[7] 고용상 남녀비차별	6
	[8] 비정규직 근로자 비차별	2
	[9] 외국인 근로자 비차별	3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13)	[10] 결사·단체교섭의 자유	4
	[11]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처우 금지	4
	[12] 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	5
4. 강제 노동의 금지(8)	[13] 강제노동 금지	6
	[14] 협력회사에 의한 강제노동 예방	2
5. 아동노동의 금지(3)	[15] 연소자 고용 금지	3
6. 산업안전 보장(13)	[16] 근무 공간에 대한 안전	4
	[17]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4
	[18] 필수장비 제공 및 교육 실시 등	3
	[19] 산업재해 피해근로자 지원	2
7. 책임있는 이해관계자 관리(6)	[20] 협력회사 등의 인권경영 실천 지원	3
	[21] 모니터링 실시	3
8. 지역주민의 인권 보호(5)	[22] 지역주민 인권의 존중·보호	2
	[23] 지식재산권 보호	3
9. 환경권 보장(8)	[24] 환경경영체제 수립 및 유지	3
	[25] 환경 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원칙	2
	[26] 비상계획 수립	3
10. 고객 인권 보호(8)	[27] 고객 보호를 위한 법령 준수	2
	[28] 고객 정보 보호	6
<b>합계</b>		<b>104</b>

〈표 3-3〉 주요사업(연구사업) 인권영향평가 지표

평가분야	구분	지표 총계
1. 책임있는 연구관리(9)	연구관리 및 평가	5
	연구윤리 준수	4
2. 국민 및 고객 인권 보호(11)	연구 관련 정보 제공	3
	연구성과 이상 시 조치	2
	인권침해 예방	3
	고충처리제도	3
3. 연구사업 종사자의 인권 보호(9)	차별대우	2
	연구환경	2
	고충처리제도	5
<b>합계</b>		<b>29</b>

## 2. 인권영향평가 결과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 전체 104개 평가지표 중 96개 지표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확인됨. 2개 지표에서 ‘보완필요’, 2개 지표에서 ‘아니요’, 4개 지표에서 ‘해당없음’ 으로 평가됨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 전체 29개 평가지표 중 28개 지표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확인됨. 1개 지표에서 ‘해당없음’ 으로 평가됨

〈표 3-4〉 2021년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인권영향평가 결과 요약

구분	평가분야	총계	평가결과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기관 운영	①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24	23	1			
	② 고용상의 비차별	16	14				2
	③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13	13				
	④ 강제 노동의 금지	8	7	1			
	⑤ 아동노동의 금지	3	3				
	⑥ 산업안전 보장	13	13				
	⑦ 책임있는 이해관계자 관리	6	4		2		
	⑧ 지역주민의 인권 보호	5	4				1
	⑨ 환경권 보장	8	7				1
	⑩ 고객 인권 보호	8	8				
		<b>합계</b>	<b>104</b>	<b>96</b>	<b>2</b>	<b>2</b>	
주요 사업	① 책임있는 연구관리	9	9				
	② 국민 및 고객 인권 보호	11	10				1
	③ 연구사업 종사자의 인권 보호	9	9				
		<b>합계</b>	<b>29</b>	<b>28</b>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 ‘보완필요’, ‘아니요’로 평가된 지표는 다음과 같음

<표 3-5>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 세부지표 내용

분야	항목	세부 지표	평가결과
①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1] 인권존중 정책선언	· 인권정책선언은 정기적으로 재검토되고 개선된다.	보완필요
④ 강제노동의 금지	[14] 협력회사에 의한 강제노동 예방	· 협력회사에서 강제노동을 이용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보완필요
⑦ 책임있는 이해관계자 관리	[21] 모니터링 실시	· 연구원은 설문이나 현장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주요 협력회사의 인권보호 준수여부를 모니터링한다.	아니요
		· 연구원은 모니터링 결과 협력회사의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나면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관계의 단절을 고려한다.	아니요

### 가.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표 3-6>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영역별 분석의견

평가분야	분석의견
①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경영현장 제정, 인권영향평가 실시, 구체절차 마련, 인권경영 교육 실시 등 인권경영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규범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확인</li> <li>- 향후 지속적으로 대내외 인권현황을 면밀히 살펴 인권경영 관련규정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함</li> </ul>
② 고용상의 비차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 관련 법률을 준수하며, 고용상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조치를 취하고 있음</li> </ul>
③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원은 공공기관으로서 관련 법률에 따라 노동조합을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 규정을 마련하여 근로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음</li> </ul>
④ 강제 노동의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당한 강제노동을 실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li> <li>- 협력회사와 계약 시 인권 관련 조항이 포함된 청렴서약서를 징구하여 강제노동을 비롯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li> <li>- 협력회사 강제노동 현황의 지속적 관리·감독활동은 다소 부족</li> </ul>
⑤ 아동노동의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세 미만 연소자에 대하여 아동노동을 실시하지 않음</li> </ul>

평가분야	분석의견
⑥ 산업안전 보장	- 안전교육 이수, 보건의료함 및 심장제세동기 비치 등 법령에 따라 모든 직원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관리하고 있음
⑦ 책임있는 이해관계자 관리	- 현재 협력회사와 계약 시 인권 관련 조항이 포함된 청렴서약서를 징구하고 있음 - 향후 협력회사의 인권보호 현황에 대해 모니터링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⑧ 지역주민의 인권 보호	- 연구원은 일사일촌 협약 등을 통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지역주민과의 협의가 필요할 경우 이를 이행하고 있음 - 지식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하고 정당한 협상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⑨ 환경권 보장	-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에 따라 환경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이행하고 환경문제에 대해서 예방적 접근의 원칙을 견지하기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⑩ 고객 인권 보호	- 고객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보호조치를 이행하고 있음

## 나.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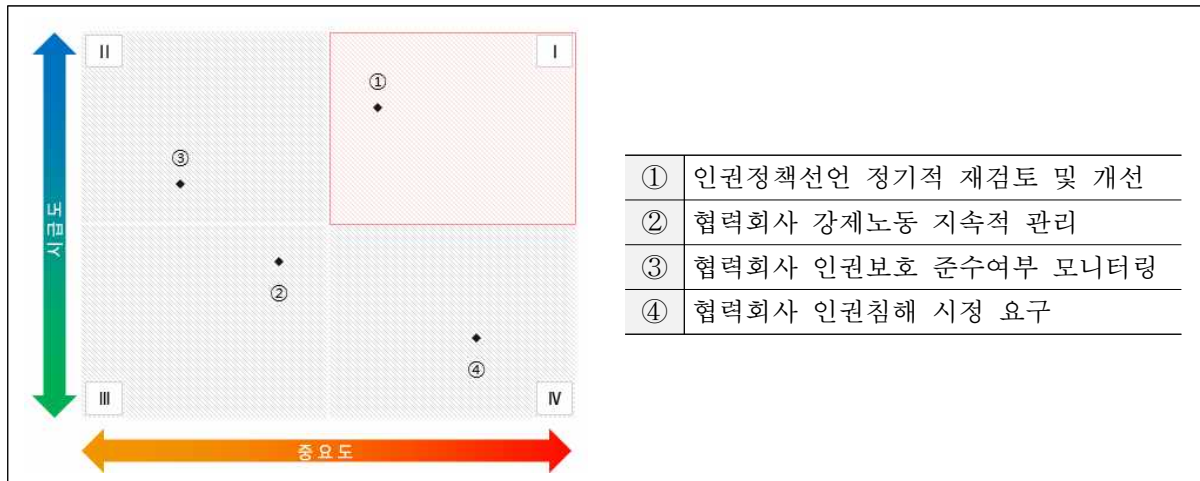
<표 3-7>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영역별 분석의견

평가분야	분석의견
① 국민 및 고객 인권 보호	- 연구원은 관리규정, 연구조정위원회 지침 등을 마련하여 연구관리 및 평가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음 - 연구윤리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지원하여 연구윤리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② 국민 및 고객 인권 보호	- 연구 관련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연구성과에 이상이 발견될 시 즉시 조치를 취하는 등 국민 및 고객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③ 연구사업 종사자의 인권 보호	- 연구사업 종사자가 차별대우 및 폭력 등을 경험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 원활한 연구 수행을 위해 편의시설 및 물품을 적절히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3. 개선방안 제언

-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 나타난 주요 보완지표를 그 중요도와 시급도에 따라 매트릭스 분석을 실시하여 아래와 같이 분류함. I 영역은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우선과제, II, IV영역은 우선과제를 마련한 뒤 개선해야 할 차기과제, III영역은 향후 중장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장기과제로 구분할 수 있음

<표 3-8> 인권영향평가 중요도/시급도 매트릭스 분석 결과



-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도출한 주요 개선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함

<표 3-9> 인권영향평가 지표별 개선 조치사항

시급성	세부 지표	개선 조치사항
우선과제 (I 영역)	① 인권정책선언 정기적 재검토 및 개선	국내외 인권 이슈 및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인권경영 정책선언 검토·개선
차기과제 (II, IV영역)	③ 협력회사 인권보호 준수여부 모니터링	협력회사 인권경영 실태조사, 체크리스트 등 인권경영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연구·마련
	④ 협력회사 인권침해 시정 요구	협력회사의 인권침해 행위 발생 시, 시정 요구를 위한 다양한 조치방안 연구(규정 마련, 계약자료 활용 등)
장기과제 (III영역)	② 협력회사 강제노동 지속적 관리	협력회사 대상 인권선언문 제정 등의 활동을 통해 강제노동, 아동노동 등 인권침해 노동에 대한 경각심 제고